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한덕수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검찰이 마약·조직범죄, 금융·증권범죄 등 중요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반부패·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·조직범죄부로 분리하면서 그 하부조직을 신설하고, 대검찰청 반부패부, 마약·조직범죄부 및 공공수사부에 각각 반부패기획관, 마약·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하며,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과 범죄정보 검증·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하면서 그 하부조직을 정비하는 한편,

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·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(4급)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3. 5. 4. ~ 5. 9.)
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4제1항 중 “총괄”을 “총괄, 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9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9호(종전의 제6호) 중 “제5호”를 “제8호”로 한다.

6.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·감독에 관한 사항
7.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
8.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

제3조의5 및 제3조의6을 각각 제3조의6 및 제3조의5로 한다.

제3조의5(종전의 제3조의6)의 제목 “(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)”를 “(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범죄정보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두고, 그 밑에 범죄정보1담당관 및 범죄정보2담당관을 둔다.

제3조의5(종전의 제3조의6)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보관리담당관”

을 “범죄정보1담당관”으로, “대검찰청 차장검사를”을 “범죄정보기획관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”를 “제4조제1항제1호”로, “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·관리 및 분석”을 “정보와 자료의 분석·검증·평가 및 관리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지방검찰청(지청을 포함한다)에서”를 “대검찰청 외의 검찰청(지청을 포함한다)이”로, “수사정보”를 “정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수사정보”를 각각 “정보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그 밖에 중요 범죄정보와 자료의 분석·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
5. 범죄정보와 관련된 검찰사무의 기획·조정·지원·지휘·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

제3조의5(중전의 제3조의6)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범죄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.

1. 「검찰청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중요 범죄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제4조제1항 중 “반부패·강력부, 형사부”를 “반부패부, 형사부, 마약·조직범죄부”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 및 반부패기획관과 그 분장사무) ①

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반부패1과, 반부패2과 및 반부패3과를 두고, 반부패부장 밑에 반부패기획관 1명을 둔다.

② 반부패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공무원, 공공단체의 직원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, 변호사,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·감독에 관한 사항
2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
3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·내사·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
4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·분석·관리·연구,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
5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·교양에 관한 사항
6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

③ 반부패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금융·증권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·감독에 관한 사항
2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
3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·내사·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
4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·분석·관리·연구,

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

5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·교양에
관한 사항

6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

④ 반부패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조세·공정거래범죄사건, 대규모 경제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
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·감독에 관한 사항

2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

3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·내사·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

4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·분석·관리·연구,
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

5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·교양에
관한 사항

6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

⑤ 반부패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반부패부장을 보좌한다.

1. 공무원, 공공단체의 직원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
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, 변호
사,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, 금융·증권·조세
·공정거래범죄사건, 대규모 경제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
관한 검찰사무의 지휘·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

2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·분석·관리·연구,

수사지침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

3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 업무의 기획·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에
관한 사항

4.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·관리에 관한 사항

5.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계좌추적 및 회계분석 등 수사기법
의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

6.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
관한 사항

6.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

제7조제5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대검찰청 마약·조직범죄부에 둘 과 및 마약·조직범죄기획관
과 그 분장사무) ① 대검찰청 마약·조직범죄부에 마약과, 조직범죄과
및 범죄수익환수과를 두고, 마약·조직범죄부장 밑에 마약·조직범죄
기획관 1명을 둔다.

② 마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마약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·감독에 관한 사항

2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

3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·내사·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

4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·분석·관리·연구,
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

5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·교양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

③ 조직범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조직범죄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·감독에 관한 사항
2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
3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·내사·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
4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·분석·관리·연구,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
5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·교양에 관한 사항

④ 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지원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·감독에 관한 사항
2. 제1호의 사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
3. 제1호의 사무에 관한 진정·내사·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
4. 제1호의 사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·분석·관리·연구,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
5. 제1호의 사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·교양에 관한 사항
6.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기법의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

⑤ 마약·조직범죄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마약·조직범죄부장을 보좌한다.

1. 마약·조직범죄 사건 및 범죄수익환수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·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
2. 제1호의 사건, 사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·분석·관리·연구, 수사지침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
3. 제1호의 사건, 사무에 관한 수사업무의 기획·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
4.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·관리에 관한 사항
5.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수사기법의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
6.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

제8조의 제목 “(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)”를 “(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둘 과 및 공공수사기획관과 그 분장사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둔다”를 “두고, 공공수사부장 밑에 공공수사기획관 1명을 둔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제3호”를 “제1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(중전의 제6호) 중 “제3호”를 “제1호”로, “탄원, 그 밖의 내사사건의”를 “탄원 등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(중전의 제7호) 중 “기타 부내”를 “그 밖에

부 내”로, “아니하는”을 “않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공공수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공수사부장을 보좌한다.

1. 공공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
2. 공공수사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
3. 공공수사 관련 자료의 수집·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

제15조제6항 중 “제16조의6제5항”을 “제16조의6제6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형사제4부”를 “공공수사부”로 한다.

제16조의2제1항 중 “형사제4부, 여성아동범죄조사부”를 “여성아동범죄조사부, 공공수사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형사제2부장·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3항·제4항”을 “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제16조의6제5항”을 “제16조의6제6항”으로 한다.

⑤ 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.

제16조의4제3항 중 “제16조의6제5항”을 각각 “제16조의6제6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5제3항 중 “형사제6부·금융조사제1부·금융조사제2부”를 “형사제6부,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부, 금융조사제1부, 금융조사제2부”로 한다.

제16조의6제1항 중 “인권보호부·형사제1부·형사제2부·형사제3부·

형사제4부·형사제5부·형사제6부·여성아동범죄조사부·공판부·금융조사제1부 및 금융조사제2부”를 “인권보호부, 형사제1부, 형사제2부, 형사제3부, 형사제4부, 형사제5부, 형사제6부, 여성아동범죄조사부, 공판부,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부, 금융조사제1부 및 금융조사제2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가. 금융·증권 관련 범죄

나. 중요 기업범죄

다.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

2. 일반 형사사건과 금융·증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3.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4.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·정비에 관한 사항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

제16조의7제1항 중 “형사제4부, 여성아동범죄조사부”를 “여성아동범죄조사부, 공공수사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형사제2부장·형사제3

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3항·제4항”을 “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16조의6제5항”을 “제16조의6제6항”으로 한다.

⑤ 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.

제16조의8제3항 중 “제16조의6제5항”을 “제16조의6제6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9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“제16조의6제5항”을 각각 “제16조의6제6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11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제16조의6제5항”을 각각 “제16조의6제6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6항부터 제30항까지를 각각 제27항부터 제31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⑬ 금융·증권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금융·증권 관련 범죄사건의 수사
2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·정비에 관한 사항
3.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

⑭ 금융·증권범죄수사과를 두지 않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금융·증권범죄수사과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공공수사지원과장·수사과장·조사과장·조직범죄수사과장”을 “공공수사지원과장, 수사과장, 조사과장, 금융·증권범죄수사

과장, 조직범죄수사과장”으로 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7,938”을 “7,93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7,938”을 “7,939”로 하며, 검찰수사서기관 “112”를 “113”으로 한다.

별표 4 중 서울남부지방검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서울남부지방검찰청	형 사 제 1 부	조사과
	형 사 제 5 부	수사과
	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부	금융·증권범죄수사과
	공 판 부	공판과
	사 무 국	총무과·사건과·집행과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4(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) ①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정책의 <u>총괄</u> , 인권침해 감독·예방, 검찰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등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관을 두고, 그 밑에 인권기획담당관, 인권감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둔다.	제3조의4(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) ① --- ----- <u>총괄</u> , <u>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</u>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인권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.	② ----- ----- 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. <u>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·감독에 관한 사항</u>
<u><신 설></u>	7. <u>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</u>
<u><신 설></u>	8. <u>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</u>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·협력에 관한	9. ----- <u>제8호</u> ----- -----

사항 ③・④ (생략) <u>제3조의5</u> (생략) <u>제3조의6</u>(<u>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</u>) ① <u>대검찰청 차장검사</u> 밑에 <u>정보관리담당관을 둔다.</u> ② <u>정보관리담당관</u>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<u>대검찰청 차장검사</u>를 보좌한다. 1. 「<u>검찰청법</u>」 <u>제4조제1항제1호</u>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<u>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·관리 및 분석</u>에 관한 사항 2. <u>지방검찰청(지청을 포함한다)에서</u> 수집한 범죄 관련 <u>수사정보와 자료의 관리·분석·검증 및 평가</u>에 관한 사항 3. 다른 기관에서 <u>대검찰청으로</u> 이첩된 범죄 관련 <u>수사정보와</u>	-- ③・④ (현행과 같음) <u>제3조의6</u> (현행 제3조의5와 같음) <u>제3조의5</u>(<u>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</u>) ① <u>범죄정보업무에</u> 관하여 <u>대검찰청 차장검사</u>를 보좌하기 위하여 <u>범죄정보기획관</u>을 두고, 그 밑에 <u>범죄정보1담당관</u> 및 <u>범죄정보2담당관</u>을 둔다. ② <u>범죄정보1담당관</u>----- ----- <u>범죄정보기획관</u>을 -----. 1. ----- <u>제4조제1항제1호</u>----- ----- ----- <u>정보와 자료의 분석·검증·평가 및 관리</u>----- 2. <u>대검찰청 외의 검찰청(지청을 포함한다)이</u> ----- ----- <u>정보</u>----- ----- 3. ----- ----- <u>정보</u>-----
---	--

자료의 관리·분석·검증 및
평가에 관한 사항

4. 제1호에 따른 수사정보와 자
료의 수집절차 및 적정성 등
을 검증·평가하기 위한 회의
의 운영 지원

<신 설>

<신 설>

제4조(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
청 검사의 직무) ① 대검찰청에
기획조정부, 반부패·강력부,
형사부, 공공수사부, 공판송무
부, 과학수사부 및 감찰부를 둔
다.

4. 그 밖에 중요 범죄정보와 자
료의 분석·검증 및 평가에
관한 사항

5. 범죄정보와 관련된 검찰사무
의 기획·조정·지원·지휘·
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

③ 범죄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
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
보좌한다.

1. 「검찰청법」 제4조제1항제1
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
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
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
에 관한 사항

2. 그 밖에 중요 범죄정보와 자
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
항

제4조(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
청 검사의 직무) ① -----
----- 반부패부, 형사부, 마
약·조직범죄부-----

--.

② (생략)

제6조(대검찰청 반부패·강력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) ① 대검찰청 반부패·강력부에 수사지휘·지원과, 범죄수익환수과 및 마약·조직범죄과를 둔다.

② 수사지휘·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공무원,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, 변호사,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, 금융·증권·조세·공정거래·첨단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·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
2.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
3.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·내사·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
4.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·분석·관리·연구,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 및 반부패기획관과 그 분장사무)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반부패1과, 반부패2과 및 반부패3과를 두고, 반부패부장 밑에 반부패기획관 1명을 둔다.

② 반부패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공무원, 공공단체의 직원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, 변호사,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·감독에 관한 사항
2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
3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·내사·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
4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·분석·관

<u>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</u> 5.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<u>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·교양에 관한 사항</u> 6. <u>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 업무의 기획·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</u> 7. <u>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·관리에 관한 사항</u> 8.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<u>계좌추적 및 회계분석 등 수사기법의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</u> 9.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<u>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 10.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삭제 ④ <u>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 1. <u>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지원에 관한 사항</u> 2. 제1호와 관련된 수사지원에 <u>관한 사항</u>	<u>리·연구,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</u> 5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<u>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·교양에 관한 사항</u> 6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<u>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</u> 7.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<u>반부패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 1. <u>금융·증권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·감독에 관한 사항</u> 2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<u>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</u> 3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<u>진정·내사·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</u> 4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<u>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·분석·관리·연구,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</u>
---	--

3.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기

법의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

4. 범죄수익환수와 관련된 국제

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

에 관한 사항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

와 관련된 지도·교육에 관한

사항

⑤ 마약·조직범죄과장은 다음

사항을 분장한다.

1. 마약사건 및 조직범죄·강력

범죄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

지휘·감독에 관한 사항

2.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

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

한 사항

3.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

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

지도·교양에 관한 사항

4.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

범죄현상의 분석·연구·수사

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

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

사항

5.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관련

하여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

발간에 관한 사항

5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

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·

교양에 관한 사항

6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

관 협조에 관한 사항

④ 반부패3과장은 다음 사항을

분장한다.

1. 조세·공정거래범죄사건, 대

규모 경제사건 및 검찰총장이

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

의 지휘·감독에 관한 사항

2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

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

사항

3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·

내사·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

사항

4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

상 및 정보의 수집·분석·관

리·연구, 수사지침 수립 및

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

발간에 관한 사항

5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

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·

교양에 관한 사항

대한 진정 · 내사 · 탄원, 그 밖
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
사항

⑥ 삭제

6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
관 협조에 관한 사항

⑤ 반부패기획관은 다음 사항에
관하여 반부패부장을 보좌한다.

1. 공무원, 공공단체의 직원,
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
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뇌물
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
체의 간부직원, 변호사, 그 밖
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
범죄사건, 금융 · 증권 · 조세
· 공정거래범죄사건, 대규모
경제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
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
지휘 · 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
한 사항

2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
상 및 정보의 수집 · 분석 · 관
리 · 연구, 수사지침 및 국내외
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
관한 사항

3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 업
무의 기획 · 조정 및 유관기관
협조에 관한 사항

4.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
및 범죄정보의 처리 · 관리에

제7조(대검찰청 형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) ① ~ ④ (생략) ⑤ 형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7. (생략) 8. <u>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·보호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·감독에 관한 사항</u> 9. <u>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</u> 10. <u>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</u> <u><신설></u>	<u>관한 사항</u> 5.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<u>계좌추적 및 회계분석 등 수사기법의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</u> 6.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<u>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 7. 그 밖에 <u>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</u> 제7조(대검찰청 형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<u>제7조의2(대검찰청 마약·조직범죄부에 둘 과 및 마약·조직범죄기획관과 그 분장사무) ① 대</u>
---	---

검찰청 마약·조직범죄부에 마약과, 조직범죄과 및 범죄수익 환수과를 두고, 마약·조직범죄부장 밑에 마약·조직범죄기획관 1명을 둔다.

② 마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마약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·감독에 관한 사항

2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

3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·내사·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

4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·분석·관리·연구,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

5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·교양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

③ 조직범죄과장은 다음 사항을

분장한다.

1. 조직범죄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·감독에 관한 사항

2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

3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·내사·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

4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·분석·관리·연구,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

5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·교양에 관한 사항

④ 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지원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·감독에 관한 사항

2. 제1호의 사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

3. 제1호의 사무에 관한 진정·

내사·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

4. 제1호의 사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·분석·관리·연구,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

5. 제1호의 사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·교양에 관한 사항

6.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기법의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

⑤ 마약·조직범죄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마약·조직범죄부장을 보좌한다.

1. 마약·조직범죄 사건 및 범죄수익환수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·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

2. 제1호의 사건, 사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·분석·관리·연구, 수사지침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

3. 제1호의 사건, 사무에 관한 수사업무의 기획·조정 및 유

	<u>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</u> 4. <u>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</u> <u>및 범죄정보의 처리·관리에</u> <u>관한 사항</u> 5. <u>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</u> <u>한 수사기법의 연구·개발에</u> <u>관한 사항</u> 6. <u>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</u> <u>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</u> <u>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 7. <u>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</u> <u>사항</u>
제8조(<u>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둘</u> <u>과와 그 분장사무</u>) ① <u>대검찰청</u> <u>공공수사부에</u> <u>공안수사지원과</u> <u>· 선거수사지원과</u> 및 <u>노동수사</u> <u>지원과를 둔다.</u> ② <u>공안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</u> <u>항을 분장한다.</u> 1. <u>공공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</u> <u>사항</u> 2. <u>공공수사 관련 자료의 수집</u> <u>·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u> 3. (생략) 4. <u>제3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</u>	제8조(<u>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둘</u> <u>과 및 공공수사기획관과 그 분</u> <u>장사무</u>) ① ----- ----- ----- <u>두고, 공공수사부장 밑</u> <u>에 공공수사기획관 1명을 둔다.</u> ②----- -----.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1. (현행 제3호와 같음) 2. <u>제1호</u>-----

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5. (생략) 6. 제3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·내사·<u>탄원</u>,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7.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<u>아니하는</u> 사항 ③ 삭제 ④·⑤ (생략) <u><신설></u>	----- 3. (현행 제5호와 같음) 4. 제1호----- -----<u>탄원 등의</u>----- ----- 5. 그 밖에 부내----- -----<u>않는</u>-----
제15조(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 ~ ⑤ (생략) ⑥ 반부패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.	④·⑤ (현행과 같음) ⑥ 공공수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공수사부장을 보좌한다. 1. 공공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. 공공수사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3. 공공수사 관련 자료의 수집·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제15조(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제16조의6제6항----- -----.

⑦ ~ ⑩ (생략)

제16조(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) ①·② (생략)

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2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4부, 반부패수사부, 강력범죄수사부, 공판제1부, 공판제2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.

④ (생략)

제16조의2(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 대구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, 형사제1부, 형사제2부, 형사제3부, 형사제4부, 여성아동범죄조사부, 반부패수사부, 강력범죄수사부, 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를 둔다.

② (생략)

③ 형사제1부장 · 형사제2부장 · 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3항 · 제4항 · 제7항,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

⑦ ~ ⑩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공공수사부 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6조의2(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 -----

----- 여성아동범죄조사부, 공공수사부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 -----

은 검사장이 정한다.

④ (생략)

<신설>

⑥ 반부패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.

⑦·⑧ (생략)

제16조의4(인천지방검찰청 등에
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·②
(생략)

③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, 형사제2부장, 형사제3부장, 형사제4부장,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3항·제4항·제6항·제7항,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,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, 형사제2부장, 형사제3부장, 형사제4부장,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4항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 각 부장 간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.

⑥ -----
----- 제16조의6제6항-----
-----.

⑦·⑧ (현행과 같음)

제16조의4(인천지방검찰청 등에
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제16조의6제6항-----

----- 제16조의6제6항-----

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.

④ ~ ⑩ (생략)

제16조의5(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) ①·② (생략)

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6부·금융조사제1부·금융조사제2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.

④ (생략)

제16조의6(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·형사제1부·형사제2부·형사제3부·형사제4부·형사제5부·형사제6부·여성아동범죄조사부·공판부·금융조사제1부 및 금융조사제2부를 둔다.

② ~ ④ (생략)

<신설>

--.

④ ~ ⑩ (현행과 같음)

제16조의5(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형사제6부,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부, 금융조사제1부, 금융조사제2부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6조의6(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 -----
----- 인권보호부, 형사제1부, 형사제2부, 형사제3부, 형사제4부, 형사제5부, 형사제6부, 여성아동범죄조사부, 공판부,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부, 금융조사제1부 및 금융조사제2부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

⑤ (생략) 제16조의7(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광주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, 형사제1부, 형사제2부, 형사제3부, <u>형사제4부</u>, <u>여성아동범죄조사부</u>, 반부패·강력수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. ② (생략) ③ <u>형사제1부장·형사제2부장·</u>	<u>및 처리에 관한 사항</u> <u>가. 금융·증권 관련 범죄</u> <u>나. 중요 기업범죄</u> <u>다.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</u> <u>2. 일반 형사사건과 금융·증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</u> <u>3.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 <u>4.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·정비에 관한 사항</u> <u>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</u> 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 제16조의7(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----- ----- ----- <u>여성</u> <u>아동범죄조사부, 공공수사부</u>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<u>형사제2부장 및</u>
---	--

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3항·제4항·제7항,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.

④ (생략)

<신설>

⑤ 반부패·강력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·제8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.

⑦ (생략)

제16조의8(대전지방검찰청 등에
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·②
(생략)

③ 형사제1부장, 형사제2부장, 형사제3부장,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(울산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)은 제13조제2항(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), 같은 조 제3항·제4항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, 같은 조 제15항(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

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.

⑥ -----
----- 제16조의6
제6항-----.

⑦ (현행과 같음)

제16조의8(대전지방검찰청 등에
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에 한정한다),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.

④ ~ ⑦ (생략)

제16조의9(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 (생략)

②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및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의 형사제1부장, 형사제2부장, 형사제3부장, 형사제4부장,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(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에 한정한다)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같은 조 제10항·제11항, 같은 조 제12항(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에 한정한다), 같은 조 제13항·제14항,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.

③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의 형사제1부장·형사제2부장·형사제

제16조의6제6항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6조의9(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

제16조의6제6항

③

3부장·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,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.

④ 의정부지방법검찰청의 형사제1부장·형사제2부장·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,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.

⑤ 청주지방법검찰청, 전주지방법검찰청 및 제주지방법검찰청의 형사제1부장,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

제16조의6제6항-----

-----.

④ -----

제16조의6제6항-----

-----.

⑤ -----

4항까지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,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.

⑥ 춘천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,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.

⑦ ~ ⑪ (생략)

제16조의11(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 (생략)

②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형사제1부장·형사제2부장·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,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,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,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,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,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, 대구지방검찰청 서부

제16조의6제6항-----

-----.

⑥ -----

----- 제16조의6제6항-----

-----.

⑦ ~ ⑪ (현행과 같음)

제16조의11(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지청,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,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형사제1부장·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,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,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,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,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,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,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시청,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,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,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지청장이 정한다. 이 경우 제13조제3항제6호, 같은 조 제6항제1호,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“검사장”은 “지청장”으로 본다.

③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시청,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, 대전

제16조의6제6항

③

지방검찰청 홍성지청, 대전지방
검찰청 서산지청, 청주지방검찰
청 충주지청, 대구지방검찰청
경주지청 및 창원지방검찰청 마
산지청의 형사부장은 제13조제
2항부터 제4항까지, 같은 조 제
6항부터 제8항까지, 같은 조 제
10항부터 제15항까지, 제16조의
4제7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
항을 분장한다. 이 경우 제13조
제3항제6호, 같은 조 제6항제1
호,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같은
조 제8항제1호 중 “검사장”은
“지청장”으로 본다.

④·⑤ 삭제

⑥ (생략)

제17조(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
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
무) ① ~ ⑫ (생략)

<신설>

----- 제16조의6제6항 -----
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
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
무) ① ~ ⑫ (현행과 같음)

⑬ 금융·증권범죄수사과장은
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
는 금융·증권 관련 범죄사건
의 수사
2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
보 및 자료의 수집·정비에

<신 설>

제18조(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
와 그 분장사무) ①사무국을 두
지 아니하는 지방검찰청 지청에
사무과를 두며, 사무과장은 지
방검찰청 사무국의 각 과장의
분장사무 중 공공수사지원과장
· 수사과장 · 조사과장 · 조직법
죄수사과장 및 마약수사과장의
분장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
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2]

검사 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(지청 포함) 공무원 정원표
(제2조제2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7,938</u>	<u>7,939</u>	+1
일반직 계	<u>7,938</u>	<u>7,939</u>	+1
·	·	·	
·	·	·	
검찰수사서기관	<u>112</u>	<u>113</u>	+1
·	·	·	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68